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 Q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 Q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Q 3.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Q 4. '계속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 Q 5.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

» 매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

»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www.ei.go.kr](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Q 6.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어요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 (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봄, 시행일 소급 불인정)

예시

A근로자를 정년퇴직('20.10.1.) 후 계속고용한 기업이 '21.3.1.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A근로자 정년퇴직일 이전인 '20.9.1.로 소급하여 명시하는 경우 A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20.1.1.~'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지원 ('19.12.31.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www.moel.go.kr](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중장년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